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550300 보건소의 코로나 확진자 재검요청 거부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광역시 00 보건소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2021. 7. 7.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밀접 접촉하여 2021. 7. 8.~2021. 7. 21. 자가격리를 하였고, 2021. 7. 20. 피진정

기관에서 실시한 PCR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도 인해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피진정인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PCR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여 진정인이 부당하게 다시 격리되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진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격리처분 예정자가 재검사를 요청을 하는 경우 피진정기관이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방역 당국인 해당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의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방역 정책하에서 결정될 재량사항으로,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거나 관련 법규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II.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본 진정사건이 발생한 2021. 7.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 관련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없고, 다만 검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과 관련된 역학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검사를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위양성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는 점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2조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유전자증폭검사라고 하는 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RT-PCR, 실시간 역전사 종합 효소 연쇄반응) 검사의 경우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

타내고 있고 코로나19 검사의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 검사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는 감염병 의심자를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유례없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진정인 등 방역 당국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급박한 행정목적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를 근거로 감염병 의심자를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감염병의 특성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실정법에 그 절차와 요건을 특정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CR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격리시키는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PCR검사의 정확도와는 별개로 채취가 잘못되거나 검체물이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인 요소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점, 민감도 99%의 경우 확률적으로 100명 중 1명은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 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절차도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유전자 증폭횟수(CT) 1~38 값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검사 값을 신뢰하고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불허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확진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재검사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피진정기관을 포함하여 OO 지역 3개 구(O구, OO구, OO구) 등은 재검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2021. 9. OO보건소에서

재검사를 통해 최초 확진 판정이 번복된 사례 등 PCR 검사 결과가 잘못 측정되는 경우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더 이상 단언할 수 없어 보인다.

비록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검사기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검사기관에서 자가격리 여부 등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국가기관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에서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검사를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에 따른 격리처분 등은 진정한 등과 같은 피해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보통 단시간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검사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권리를 구제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2. 3. 25.

위원장 박찬운

위원 석원정

위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

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

시물 등의 부착

-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